

법령Ⅱ -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법령

비상대비자원 관리법(시행령 포함)

문 1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‘비상사태’란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를 말한다.
- ② ‘과학기술자’란 자연과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,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- ③ ‘기본지침’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작성하는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을 말한다.
- ④ ‘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’이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,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

문 2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인력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② 담배의 수출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물적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③ 비상대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.
- ④ 비상대비자원 중 중점관리대상인력을 지정할 때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지정한다.

문 3.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상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기본계획은 국무총리가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.
- ② 집행계획은 국무총리로부터 통보된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고 국무총리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으로 확정된다.
- ③ 시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집행계획에 따라 시·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으로 확정된다.
- ④ 실시계획은 시·도지사로부터 통보된 시행계획에 따라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고 주무부장관의 승인으로 확정된다.

문 4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주무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을 받은 인력자원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기술인력의 양성을 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③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물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물자에 지정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.
- ④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년마다 소관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점검 일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문 5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시·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한다.
- ②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그 업체의 장에게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,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.

문 6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 물자의 소유자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6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주무부장관이 정부비축 물자에 대하여 비축을 해제하거나 비축물자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국무총리 또는 주무부장관은 비축물자의 비축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확인·점검할 수 있으며, 확인·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를 요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.
- ④ 주무부장관은 비축물자의 품목·규격·수량·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문 10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의 실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2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의 실시명령은 주무부장관이 그 훈련의 방법·기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.
- ② 2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은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③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의 훈련실시명령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.
- ④ 동시관리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주무부장관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.

문 11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통지서의 발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동시관리훈련의 경우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은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 훈련통지서를 발급하여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한꺼번에 교부하여야 한다.
- ②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의 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된 경우 주무부장관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그의 가족에게 훈련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하고, 통지서의 수령을 거절한 가족은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- ③ 훈련통지서의 교부는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지만,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다.
- ④ 인력훈련통지서는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시·도지사등이 훈련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, 훈련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.

문 12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 출석 등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인력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② 훈련대상자가 거주하는 읍·면·동의 장은 인력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시·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물자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.
- ④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훈련대상물자가 부동산인 경우를 제외하면 사용기관의 장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그 물자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문 13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하여 보상한다.
- ②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사람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한다.
- ③ 훈련에 참가한 사람에게는 훈련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숙박료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, 동시관리훈련인 경우에는 숙박료·교통비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④ 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의 보상청구권은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

민방위기본법(시행령 포함)

문 14.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중앙민방위협의회의 분과위원회인 재난구호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.
- ㄴ. 인사혁신처장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위원이 아니다.
- ㄷ. 병무청장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위원이다.
- ㄹ.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간사가 된다.
- ㅁ.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- ① ㄱ
- ② ㄱ, ㄴ, ㄷ
- ③ ㄴ, ㄷ, ㄹ
- ④ ㄱ, ㄴ, ㄷ, ㄹ, ㅁ